

2025년도 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 시행계획 공고(2차)

미래 급성장시장 경쟁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·도전형 R&D 지원을 위한 연구·실증 시설·장비 구축을 지원하는 「소부장 미래혁신기반구축사업」 시행계획을 공고하오니,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5년 5월 27일
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 사업개요

가. 사업목적

- 미래 新산업 선점을 위한 미래기술 구현하고, 新성장·高위험 분야 혁신·도전형R&D 지원을 통한 기술 경쟁력 선점

나. 사업내용

- 미래 급성장시장 선점에 필요한 新산업 분야 혁신·도전형 R&D 지원을 위한 연구·실증 시설·장비 구축

2 상세 지원내용

가. 지원분야

- 공모방식 : 지정공모
- 지원대상 : 1개 과제 (과제 제안요청서(RFP) 참조)

분야	과제명	별첨(RFP)
첨단	▪ 기성품(Off-the-shelf) 형태 동종유래 CAR-X 세포치료제의 핵	
바이오	심기술 확보를 위한 제조 공정 실증 기반구축	

*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(붙임2) 과제별 제안요청서(RFP) 참

나. 지원규모 및 기간

- 지원규모 : 과제당 총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00억 원 내외 (1차년도 1,537.1백만원)
 - *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개별 제안요청서(RFP) 참조
 - ** 지원규모는 정부 예산 사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- 지원기간 : 2025. 7 ~ 2028. 12 (42개월 이내)
 - * 1차년도 수행기간은 6개월('25.7월 ~ '25.12월),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
 - **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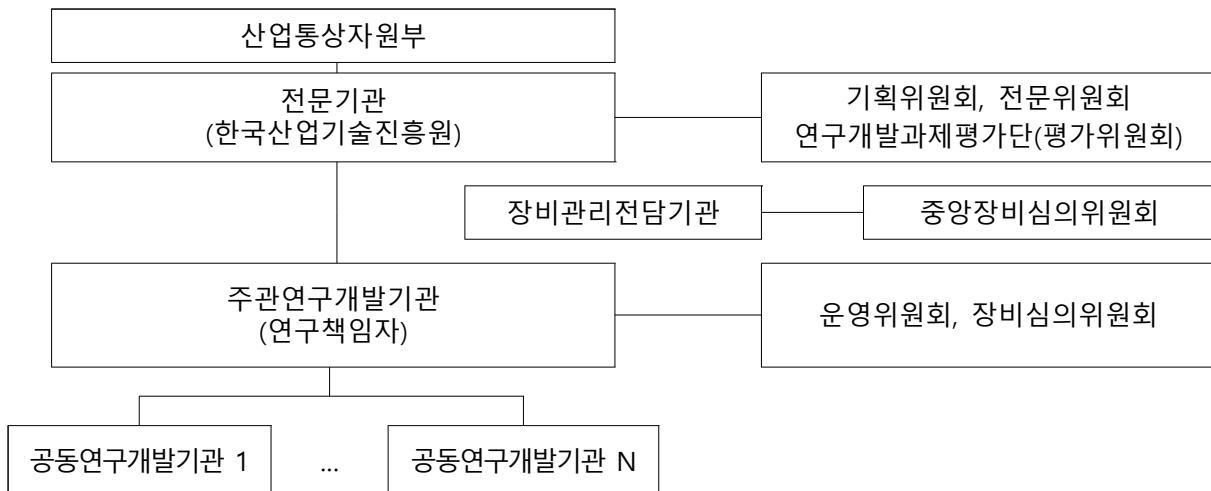
다. 신청자격 및 조건

-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의 비영리기관*
 - *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제19조 제2항에 의거한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·단체
 -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

라. 지원조건

구분	내용
지원방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전체 연구개발기간에 대해 일괄 협약 체결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(국비)는 회계연도에 따라 연차별 지급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정부 예산 사정에 따라 지급시기 조정 및 분할 지급될 수 있음○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건축비를 제외한 총연구개발비의 70% 이내에서 지원 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100억원 신청하는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(현금·현물, 지자체 포함) 합계가 43억원 이상이어야 함 ($100\text{억원} / 143\text{억원} = 70\% \downarrow$, 연차별 비율 준수)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24조 및 25조 참조*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인정기준은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 별표4 참조
연구개발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기타 연구개발비 편성시 아래 규정 준수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 제30조 및 별표5, 별표6, 별표7*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사업 평가관리지침」 제33조○ “연구시설·장비비 통합관리기관”으로 지정된 기관의 경우 수정직접비의 5% 이내에서 통합연구시설·장비비 계상 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수정직접비 : 직접비 현금 총액에서 국제공동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*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 제7장 (연구시설·장비비 사용의 특례)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제11항 참조
연구시설·장비통합관리	
연구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10% 이내로 산정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수정인건비 : 인건비(현물 포함) 및 학생인건비 포함, 연구근접지원인력 인건비 제외
간접비 기술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직접비(현금) 합계의 5% 이내로 산정○ 비징수

마. 추진체계



3 지원제외 처리기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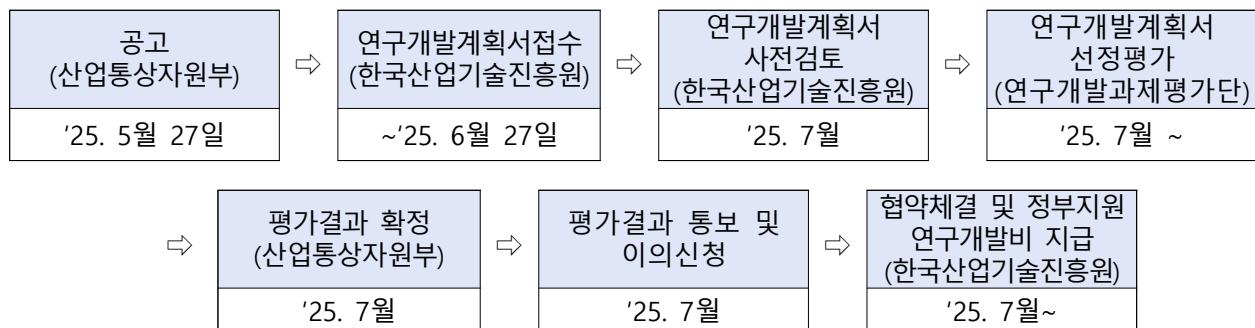
-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제23조(사전검토) 및 별표3(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,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)

구 분	내 용
공고내용과의 부합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(RFP)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
기존과제와의 차별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개발과제가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
의무사항 불이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/정산금/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
참여제한 여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,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장,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중인 경우
총 인건비계상을 및 참여과제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○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 인건비 계상률 및 참여 과제 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본 사업 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○ 다만 他 사업 지원 시에는 본 사업 과제를 동시에 수행하는 참여과제 수에서 제외 가능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*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별표3 참조

* 기타 사전지원제외 기준은 「7. 관련법령 및 규정」에 따름

4 평가절차 및 기준

가.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



*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나. 평가방법

- (사전검토) 전문기관(한국산업기술진흥원)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, 신청자격,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
- (연구개발계획서 평가)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,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진행

다. 감점 및 가점 기준
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평가 시 감점함
 - 최근 3년 이내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제1항의 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또는 제재처분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(3점) 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12조제5항제1호 관련)
 - 최근 3년 이내에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(2점) (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시행령 제12조제5항제2호 관련)

* 단 2024년 예산 감액으로인한 중단(포기) 과제의 경우 감점 미해당

-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, 평가 시 우대함
 -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단독 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지원하는 경우(5점) (「소부장특별법」 제 28조 관련)
 - * (참고) 소부장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현황 참고

라. 평가기준

<평가표(안)>

구분	평가항목	평가내용
사업목표 명확성 (20)	사업목표 명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안요청서(RFP)에 부합하는 목표 설정의 타당성 및 구체성
	목표의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성과지표의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에 대한 적절성, 달성가능성
추진체계 및 보유 역량 (20)	추진체계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주관 및 공동 연구개발기관별 역할 및 협력체계 적정성
	기반구축 역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책임자, 참여연구자 및 연구시설장비 전담인력의 전문성 ○ 기존 구축 연구시설·장비 보유 및 기술지원 역량
사업내용 타당성 (40)	추진전략 적정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차별 추진전략 구체성 및 계획의 적정성 ○ 사업 목표와 추진 내용의 부합성
	연구시설·장비 구축 타당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시설·장비 구축의 타당성 및 필요성 (수요조사 등) ○ 연구시설·장비 구축계획 적정성(종류, 예산, 사양 등) ○ 연구시설·장비 구축 전용공간 확보 여부 또는 계획 적절성 ○ 기 구축된 연구시설·장비와의 연계성 등
	연구개발비 적절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연구개발비 편성 및 운용계획의 적절성
성과확산 효과 (20)	사업지속 가능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과제 종료 후 해당 센터의 지속 가능성 및 사업의 향후 활용성
	파급효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해당 산업분야 대상으로 경제적·기술적 성과확산 적정성

5 신청방법 및 서류

가. 신청방법

구 분	내 용															
접수기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2025. 5. 27(화) 09:00 ~ 2025. 6. 27(금) 18:00 															
서식교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서식은 아래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가능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(www.kiat.or.kr, 홈페이지 → 사업·자료 → 사업공고) -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 															
접수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www.iris.go.kr)에 온라인 등록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5. 5. 27(화) 09:00 ~ 2025. 6. 27(금) 18:00 * 접수 마감일 18:00 이후 접수 및 서류 제출이 불가함 * 별도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가함 															
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</td> <td colspan="2"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신청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① 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등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 width: 50%;">②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· 승인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③ 연구과제 신청완료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① 연구자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② 연구개발 기관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able> <p>①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등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 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 필수 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 ※ ① 및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증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 ③ : 연구책임자 필수(공동·위탁연구개발기관 책임자 포함)</p> <p>② (연구개발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 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등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필수 이행사항 사전 조치 ※(유의사항) IRIS 관련 접수절차 및 최신 정보는 신청기관이 IRIS 홈페이지내 매뉴얼, 콜센터 등을 통해 확인이 필요함 ☎ IRIS 문의처: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</p> <p>① 통합회원가입 - 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, www.iris.go.kr에 등록 되어 있는지 확인하고,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</p> <p>② 온라인 등록 - 주관연구개발기관 로그인 → 사업공고 → 공고조회 → 동 사업 공고 선택 -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내용 입력</p> <p>③ 파일 업로드 - 첨부된 문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오프라인으로 작성한 후, 범부처통합 연구지원시스템, www.iris.go.kr에 업로드 - 연구개발계획서는 HWP파일로 제출하되, 맨 앞장에 필요한 인감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에 포함 - 연구개발계획서 이외의 첨부서류는 작성 후 스캔하여 PDF파일로 제출</p> <p>④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 출력 - 접수 확인을 위한 온라인제출 최종확인서를 출력한 후, 신청접수 완료 확인 및 보관</p>	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신청			① 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등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②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· 승인	③ 연구과제 신청완료	① 연구자	② 연구개발 기관			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신청														
① 연구자는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등의 및 정보 등록·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 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② 연구개발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 · 승인	③ 연구과제 신청완료												
① 연구자	② 연구개발 기관															

구 분	내 용
유의사항	<p>① 마감일에는 접속자 과다로 인해 전산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,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할 것</p> <p>② 접수 마감일 18:00까지 '완료 및 제출'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-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등록이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준비(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등록 불가)</p> <p>③ 온라인 등록시 과제 내용 및 연구개발비(단위)에 대한 오기가 없도록 주의</p> <p>④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사전 지원제외 처리 가능</p> <p>⑤ 전산등록한 연구책임자 및 실무자의 E-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평가일정 등의 안내가 실시되므로 <u>회원정보에 입력된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 필요</u> ※ 잘못된 담당자, 전화번호, 이메일 등을 기재하여 발생한 평가 안내, 결과 통보 등 미수신(연락 불능)의 책임은 신청기관에 있음</p> <p>⑥ 필요시 온·오프라인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</p>
기 타	■ 온라인 등록 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www.iris.go.kr)의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(사이트 내 다운로드 가능)

나. 제출서류

No	제출서류	파일형태	필수여부	대상
1	(서식1) 연구개발계획서	HWP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
2	(서식2)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	PDF	필수	주관·공동 (기관별)
3	(서식3)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	PDF	필수	주관·공동 (기관별)
4	(서식4) 연구윤리 · 청렴 · 인권 및 보안서약서	PDF	필수	주관·공동 (기관별)
5	(서식5) 현금 · 현물 납입확인서 (지방자치단체)	PDF	해당시	해당 지자체별
6	(서식6) 현금 · 현물 납입확인서 (연구개발기관)	PDF	해당시	해당 기관별
7	(서식7)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PDF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
8	(서식8) 전용공간 확보계획서	PDF	해당시	해당 기관별
9	(서식9) 장비도입 심의요청서	HWP	해당시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
10	(서식10)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인서	PDF	필수	주관·공동 (기관별)
11	(서식11) 우대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	PDF	필수	주관연구개발기관 대표 제출
12	법인등기부 등본, 사업자등록증, 연구책임자 재직증명서 사본	PDF	필수	주관·공동 (기관별)

* (서식5, 6) 현금 · 현물 납입확인서 상 기재한 내용만 연구개발비 산정으로 인정하며, 임의의 양식 또는 미제출 한 경우에는 불인정함

6 유의사항

-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(RCMS) 적용 대상 사업
-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%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
- 토지, 건물,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
 - 단,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·단체·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(매입) 및 현물(임차 또는 기보유)로 필요시 산정 가능
- 안전관리형 과제^{*}는 「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」 및 「산업안전보건법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
 - *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,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
- 과제의 연차별 성과, 사업비 집행 실적, 정부 예산사정 등에 따라 총 지원규모 및 연차별 예산 등은 계획 대비 조정 가능
 - * 필요시 정부 정책 방향 및 예산사정 등에 따라 향후 추가공고가 진행될 수 있음
-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
 -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既 지원 · 既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既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 제기 가능
 - 확인방법 :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(www.ntis.go.kr) 상단 검색창 사용
 - 제기기간 : 2025. 5. 27(화) ~ 6. 13(금)
 - 제기방법 :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(관련 근거자료 첨부)
 - 제기처 : (06152)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5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
-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('24.6)에 따라,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^{*}에서 심의하고,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(NFEC)에서 심의
 - *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
- 기타 사항은 「7. 관련법령 및 규정」 을 준수

7 관련법령 및 규정

가. 근거법령

- 「산업기술혁신촉진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- 「소재·부품·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, 시행규칙

나. 관련규정
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」
- 「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」
- 「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·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」
- 「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」
- 「국가연구개발 시설·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」
- 「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」

※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

8 문의처

과제접수/평가/절차 등	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정희주 연구원 (☎ 02-6009-3927)
전산등록/ 사업관리시스템(IRIS)	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(☎ 1877-2041)

참 고

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 현황 ('25년 38개)

분과	연번	기관명	특화분야	비 고
기초 소재 (12)	1	한국화학연구원	화학	대표기관
	2	한국과학기술연구원	섬유 등	
	3	FITI시험연구원	섬유	
	4	다이텍연구원	섬유	
	5	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	화학/바이오	
	6	한국섬유소재연구원	섬유	
	7	한국소재융합연구원	화학	
	8	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	화학	
	9	한국탄소산업진흥원	탄소	
	10	KATRI시험연구원	섬유	
	11	KOTITI시험연구원	섬유	
	12	한국섬유개발연구원	섬유	
응용 소재 (5)	13	한국재료연구원	재료	대표기관
	14	포항산업과학연구원	금속	
	15	한국세라믹기술원	세라믹	
	16	한국지질자원연구원	광물	
	17	고등기술연구원	경량/비철금속	
전자 부품 (6)	18	한국전자기술연구원	전자부품	대표기관
	19	한국광기술원	LED	
	20	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	기계/전기/전자	
	21	한국전자통신연구원	반도체/정보통신	
	22	나노종합기술원	반도체	
	23	차세대융합기술원	반도체	
모듈· 부품 (6)	24	한국자동차연구원	스마트카	대표기관
	25	한국생산기술연구원	융복합생산기술	
	26	건설기계부품연구원	요소부품	
	27	대구기계부품연구원	자동차부품, 지능형로봇	
	28	한국산업기술시험원	기계/자동차부품	
	29	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	섬유공정/기계부품	
시스템· 장비 (9)	30	한국기계연구원	기계	대표기관
	31	한국원자력연구원	원자력	
	32	한국전기연구원	전기	
	33	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	에너지기술	
	34	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	IT플랫폼	
	35	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	분석·평가 장비개발/지원	
	36	한국나노기술원	나노 인프라	
	37	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	의료기기	
	38	한국산업기술진흥원	기타	

* 「소재부품장비 특별법」 상 소부장 기술력 향상을 위한 연구기관 협의체